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출국대기실 운영 및 송환 관리 전담부서인 송환집행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을 증원하고, 같은 기관에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4명(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및 자동출입국심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입국재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법무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15. ~ 7.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3,211”을 “23,352”로, 일반직 계 “23,186”을 “23,327”로, 3급 또는 4급 이하 “22,974”를 “23,115”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	19명
----------------------	-----

별표 8 제2호나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출입국·외국인청)	84명
16) 자동출입국심사 관리(출입국·외국인청)	28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211</u>	<u>23,352</u>	+141
일반직 계	<u>23,186</u>	<u>23,327</u>	+14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974</u>	<u>23,115</u>	+14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2